

구온난화 방지 교토회의는 지난 12월 10일 오는 2010년 기준으로 38개 선진 국가 온실가스를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데 합의를 이루고 폐막했다.

이로써 지난 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지 5년 7개월만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교토회의에서 채택된 의정서에 따르면, 목표년도인 2008~2012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유럽연합(EU) 8%, 미국 7%, 일본 6% 감축하기로 했다. 감축대상은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산화물은 90년 기준으로 삭감하고, 대체 프레온가스 3종은 95년 기준으로 삭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 분류돼 있어 당장의 감축의무에서는 벗어났지만, 언젠가 닥쳐올 감축의무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토회의에서 채택된 의정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환경 관련 국제협의로는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 프레온가스 사용을 규제한 88년 몬트리올 의정서 이후 두 번째이다. 그러나 지구환경 파괴의 최대의 주범인 온난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로는 구속력을 가진 첫 합의이다.

그러나 감축방법으로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등 많은 장치를 인정하고 있어서 교토총회가 본래 목적에 충실히 못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배출권 거래는 넓게 보아 오염물질을 사고 파는 일종의 무역거래로서 미국측이 회의 초반부터 끈질기게 주장해 왔으며, 자국내에서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다른 나라에서의 감축비용

초점

보다 훨씬 비싸게 먹힌다는 사실 때문에 생겨난 발상이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미국은 향후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충분한 여유용량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배출권」을 사들여 자국의 초과 배출량을 상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0%의 감축을 고집하던 미국이 7% 감축 안을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 조항 때문이다.

교토총회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여 한동안 논의돼 왔던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도 삭제됐다.

따라서 명색이 OECD 회원국이지만, 기후협약에 대해서는 개도국인 우리나라

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로부터 일단 면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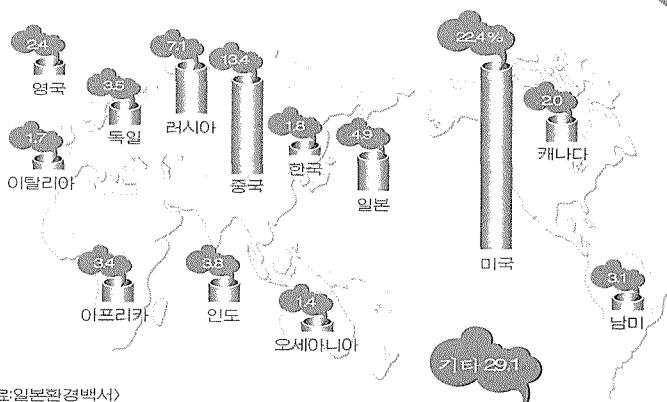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특히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국가리스트를 다시 작성하게 돼 있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다. 또 선진국이 90년 대비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이상 개도국이라고 해서 항상 예외로 취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더구나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개도국에 대해서도 감축의무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가 그 첫째 대상국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IMF 충격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충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환경친화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석유산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지구온난화 방지 교토회의의 결과와 전망

-석유협회 홍보팀-

세계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현황 (94년)



세계합계
62억t

■ 온실가스 배출조정 목표율

감축률	국가명
8% 감축	유럽연합·스위스 불가리아·체코슬로바키아 모나코·루마니아
7% 감축	미국
6% 감축	일본·캐나다·헝가리 폴란드
5% 감축	크로아티아
0% 감축	러시아·뉴질랜드 우크라이나
1% 증가	노르웨이
8% 증가	오스트레일리아
10% 증가	아이슬란드